

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배출원 관리제도 소개



글/그림 장통



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좀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합니다.

특별대책지역 지정

특별종합대책 수립

- 기존사업장 : 엄격 배출허용 기준 적용
- 신규사업장 : 특별 배출허용기준 적용

배출오염물질 총량관리
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





	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	대기환경규제지역
배출기준/의무/조언역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환경오염·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환경부 주도(환경부장관) 산업단지 위주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지자체 주도(시/도지사) 산업단지 및 교통 등 종합적 관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별종합대책 수립 엄격(기존사업장)·특별(신규사업장)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 시설 설치 배출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 지정 후 2년 이내 실천계획 고시 실천계획 고시 후 10년 이내 달성 목표 우선 오염물질 관리 위주
대책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울산·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남여수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도권역(서울, 인천, 경기도) 부산권역(부산, 김해) 대구권역 광양만권역 (경남하동, 전남광양·순천·여수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출원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출원 관리

	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	대기환경규제지역
지자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환경부 주체의 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 수립 이행 지정·고시한 날부터 시행하여 대기질 개선 단기 효과 기대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대응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기오염 발생원 종합적 관리 가능 국제적 환경규제와 개발기술에 선제적 대응가능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체 타지역 유출 우려 강화된 규제로 지역경제 위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자체 주체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종합적인 실천 계획 수립·이행 의무 발생 지정·고시 후 절차에 따라 대기질 개선 지체 예상(2년 이내) 대기오염물질 중 특정물질 우선관리로 통합관리 어려움
시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 청정 생활권 확보 오염물질 총량관리로 단기간 대기질 개선 가능 특정대기유해물질 노출 감소 산업단지만 규제하므로 시민 자율성 보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심지·생활권 대기질 개선 기대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환경유해기업 교외 지역 이주 유도 자영업자(세탁소, 주유소 등)에 대한 규제 발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단지 위주 관리로 도심지·생활권 대기질 관리 미흡 배출오염원으로서 지역이미지 고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과 승용차 요일제 확대 등 생활 불편 초래 대기질의 단기적 개선 효과 기대 어려움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지역 전체 규제로 시민 자율성 침해 우려
배출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친환경기업 이미지 제고 총량관리로 인한 인센티브 (부과금 면제, 재정 지원 등) 중소규모업체의 추가 경비 부담 경감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내 토지이용 및 시설입지 규제 없음 배출초과부담금 부담 없음 자동측정기, 오염방지·저감 시설 설치, 사업장 이전 관련 지자체 지원 확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내 토지이용, 시설입지, 사업확장 제한 신·증설 투자 위축으로 경기대응 어려움 산업단지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/유치 제약 자동측정기/방지사설 설치 의무화로 환경투자 비용 상승 우려 총량규제로 인한 사업 확장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·증설 투자 위축으로 경기대응 어려움 경제성장 둔화, 지역 경제력 감소 2종 이상 배출허용기준 강화 ※ 필요에 따라 중·소규모 업체에 대한 행정 규제 도심지 주요 사업장 외곽 이전 불가피